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의원 여러분!

송도호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
법률」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,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
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주요 내용으로는, 교통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
한 ‘교통약자 서비스 교육’을 의무화하고, 여기에 ‘성폭력
예방교육’을 추가하여 교통약자, 특히 여성·아동 등 취약계층의
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습니다.

또한 택시는 교통약자의 일상적 이동수단이므로,
택시운수종사자 역시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친절하고
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

이번 조례 개정이 서울시의 교통복지를 한층 더 진전시키는
계기가 되기를 바라며,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
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